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23 선고 2021가단551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창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4.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1) C는 2016. 12. 29.경 주식회사 D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9. 8. 12.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 2)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소5369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 14. ‘피고(C)는 원고에게 20,199,515원 및 그 중 11,591,3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1) C는 2016. 12. 16. E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받았고, 한편, C는 2016. 12. 15.경 주식회사 F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2017. 6. 10. 주식회사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 2) 원고는 2018. 6. 27.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수하고, 그 무렵 C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4819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 26. ‘피고(C)는 원고에게 56,981,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C의 아버지 G은 2013. 3. 17.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와 자녀인 C와 피고 등이 있다.
-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4. 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서산시 전 145㎡
2. 충청남도 서산시 전 311㎡
3. 충청남도 서산시 전 417㎡
4. 충청남도 서산시 대 268㎡
5. 충청남도 서산시 전 83㎡
6. 충청남도 서산시 전 68.6㎡
7. 충청남도 서산시 담 416㎡ 톨.

